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항공·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김민석 (국무조정실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,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이 개정(법률 제21317호, ‘26.1.27. 공포, ‘26.2.28. 시행)됨에 따라, 위원회 결격사유 관계기관, 상임위원의 영리업무 금지, 전문위원회 구성,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 제한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결격사유 관계기관(안 제2조의2)

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 결격사유 대상 기관 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항공·철도사업과 관계되는 기관을 국토교통부, 공항운영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으로 함.

나. 상임위원의 영리업무 금지(안 제2조의3)

상임위원의 영리 업무의 한계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.

다. 전문위원회 구성(안 제3조의2)

- 1) 15명 이내 위원(위원장 1명 포함)으로 구성,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사조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.
- 2) 위원은 항공·철도 사고조사와 관련된 특정 기술 분야, 공항·철도시설의 안전 운영·안전 관리 체계에 관한 학식·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중에 사조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·임명하도록 함.
- 3)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.

라.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 제한의 범위(안 제8조)

- 1) 법 조문이 공개 ‘금지’에서 공개 ‘제한’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이 합치되도록 조문 제목·내용을 수정함.
- 2) 법으로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피해자가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하고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등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항공·철도사고등으로 인한 부상자, 사망자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 및 부상자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로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, 제2조의3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위원의 결격사유 관계기관) 법 제8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
2. 「항공사업법」에 따른 공항운영자
3.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

제2조의3(영리업무의 금지)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제3조의2(전문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1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(이하 “전문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,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.

1. 항공·철도 사고조사와 관련된 특정 기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2. 공항·철도시설의 안전 운영 및 안전 관리 체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3. 그 밖에 해당 사고의 원인 규명 또는 안전 개선방안의 검토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법 제28조제2항”을 “법 제28조제3항”으로, “공개하지 아니”를 “공개를 제한”으로 한다.

-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.
1. 항공·철도사고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
 2. 항공·철도사고등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(사실상의 배우자

를 포함한다) · 직계존비속 · 형제자매

3. 1호에 따른 부상을 입은 사람의 배우자 · 직계존비속 · 형제자매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2(위원의 결격사유 관계기 관) 법 제8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 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관계 기 관 · 법인 ·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 <u>1.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에 따 른 국토교통부</u> <u>2. 「항공사업법」에 따른 공항 운영자</u> <u>3.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도시 철도운영자</u>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3(영리업무의 금지) 법 제 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임 위원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 라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전문위원회의 구성 등)</u> <u>① 법 제14조에 따른 전문위원 회(이하 “전문위원회”라 한다)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<u>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</u>

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
위원장이 지명하고, 전문위원회
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
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
한다.

1. 항공·철도 사고조사와 관련
된 특정 기술 분야에 관하여
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공항·철도시설의 안전 운영
및 안전 관리 체계에 관하여
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그 밖에 해당 사고의 원인 규
명 또는 안전 개선방안의 검
토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
나 경험이 필요하다고 위원장
이 인정하는 사람

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
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
수 있다.

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
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, 출
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한다.

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전
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
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

제8조(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) <신 설>

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
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해당
정보가 사고분석에 관계된 경우
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
고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
시킬 수 있다.

정한다.

제8조(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)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.

1. 항공·철도사고등으로 인해
부상을 입은 사람
2. 항공·철도사고등으로 인해
사망한 사람의 배우자(사실상
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·직계
존비속·형제자매
3. 1호에 따른 부상을 입은 사람
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
매

② 법 제28조제3항-----

----- 공개를 제한
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	
연 락 처	(044) 200 - 2240